

'23년 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운영위원회(2차) 개최 결과

1 목 적

- '23년도 근로자 및 직무교육기관 평가 종료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등급 검토·확정
- '23년도 건설기초교육기관 평가 절차·기준 및 '24년도 평가지표 개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·확정

2 일시 및 장소

- (일 시)'23. 5. 26.(금) 10:00 ~ 12:00
- (장 소)서울역 KTX2 회의실(서울역 4층)
- (세부일정)

시 간	내 용	비 고
10:00 ~ 10:10(10분)	·인사말	위원장
10:10 ~ 10:50(40분)	·평가 일정 등 안건 설명	간 사
10:50 ~ 11:00(10분)	·휴 식	
11:00 ~ 12:00(60분)	·안건 검토 및 심의	전 원

3 참 석 자

- (평가 운영위원)4명

연번	구 분	소 속	직 책	성 명
1	당연직	공단 안전보건평가실	부 장	이 상 근
2	위촉직(내부)	공단 교육혁신실	부 장	김 학 진
3	위촉직	서울과학기술대학교	교 수	박 달 재*
4	(외부)	이화여자대학교	교 수	박 윤 희

*위원장

- (업무 담당자)2명
 - 이기완 차장(간사), 김지현 대리

4

심의 · 의결사항

- (안전2)'23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계획 수립: 원안 동의
- 평가 계획 및 방법(주요 추진 일정)
 - 평가 실시: '23. 8. 7. ~ '23. 10. 6.
 - 평가자 워크숍: 7월 중
 - 평가 중간 회의: 8월 초
 - 대상 기관: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70개소(노동부 공표 및 K2B 등록 기준)
 - 대상 기간: '22. 1. 1.부터 12. 31.까지 수행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업무

- (안전3)'23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결측 지표 적정성: 원안 동의

평가 결측 지표	비고
B.1.2.1 연간 체험교육(VR)실적(횟수)적정성	코로나-19 상황으로 '22년 평가 결측
B.1.3 교보재 활용 실적	코로나-19 상황으로 '22년 평가 결측

- (안전4)'23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지표 세부 기준 정립: 원안 동의

연번	항목	검토 안건	위원회 검토 결과
1	A.1.1 연간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	☐ 신규 등록 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반영(평가 기준 명확화) [변경 전] (필수 사항) '22년 신규 등록기관 기본점수 부여 [변경 후] (필수 사항) '22년 신규 등록기관 기본점수 30점 부여 ⇒ 기본 점수 부여 기준의 명시 필요	원안 동의
2	A.2.1 법정 필수인력 정규직화 노력	☐ 평가 산식의 개선(평가 기준 명확화) [변경 전] (평가 산식) ① 총괄책임자(가목) (정규직 __명 × 6점) + (비정규직 __명 × 3점) = __ 점 ② 강사(나목) (정규직 __명 × 4점) + (비정규직 __명 × 2점) = __ 점 [변경 후] (평가 산식) ① 총괄책임자(가목) ~ 상동 ※ 법정 필수인력(3명)의 중간 퇴사 및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대해 근무개월 수 반영하여 평가 예) 가목 정규직 3개월 근무자 1명, 5개월 근무자 1명, 4개월 근무자 1명일 경우 ① 총괄책임자(가목): (정규직 @명 × 6점) + (비정규직 __명 × 3점) = __ 점 위 수식에서 @에 해당하는 인원 산정 방식 $@: (1 \times \frac{3}{12}) + (1 \times \frac{5}{12}) + (1 \times \frac{4}{12})$ ⇒ 건설기초교육기관 특성 상 법정 필수인력의 빈번한 퇴사 및 신규채용을 반영한 평가 산식의 개선 필요	원안 동의

연번	항목	검토 안건	위원회 검토 결과
3	A.2.2 추가인력 확보 노력	☐ 추가인력 판단기준 명확화(평가 기준 명확화) [변경 전] (판단 기준) ㉠교육기관의 강사로서 법정 기본인력 기준을 초과하여 채용된 노동부 등록(신고) 인력 일 것 [변경 후] (판단 기준) ㉠교육기관의 강사로서 법정 기본인력 기준을 초과 채용하여, 안전보건공단 에 등록(신고) 한 인력 일 것 ⇒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부합되게 오류 개선(시행규칙 제33조)필요	원안 동의
4	A.2.3 전담인력 활용노력	☐ 평가 대상 전담인력 기준 명확화(평가 기준 명확화) [변경 전] (평가 방법) 평가대상 기간 중 1/2이상 근무자 모두 포함 [변경 후] (평가 방법) 삭제 ⇒ 평가대상 기간 중 1/2이상 근무자로 제한할 시 전담인력 활용노력에 대한 평가의 취지와 배치되어 개선 필요	원안 동의
5	A.2.4.1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	☐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율 산정 기준 명확화(평가 기준 명확화) [변경 전] (평가 산식) (교육 이수 강사 수 / 내부강사 수) x100 [변경 후] (평가 산식) (교육 이수 강사 수 / 내부강사 수) x100 * 내부강사 수 : 평가 대상 기간 중 1/2이상 근속자 대상 (해당 기간 미만 근속하였더라도 외부 전문화교육 이수한 강사 수 포함)	원안 동의
6	A.2.4.2 강사의 전문성 향상활동 실행	☐ 전문성향상 활동 참여율 산정 기준 명확화(평가 기준 명확화) [변경 전] (평가 산식) (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강사 수/ 내부강사수) x100 [변경 후] (평가 산식) (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강사 수/ 내부강사수) x100 * 내부강사 수 : 평가 대상 기간 중 1/2이상 근속자 대상 (해당 기간 미만 근속하였더라도 전문성 향상활동 참여한 강사 수 포함) [추가 변경 사항] (변경 전)해당 기관에서 금전적 지원, 시간적 배려 등이 ~ (변경 후)해당 기관에서 금전적 지원 또는 시간적 배려 등이 ~	원안 동의
7	A.4.1 포상실적	☐ 포상실적 평가 기준 명확화(평가 기준 명확화) [변경 전] (평가 기준) - [변경 후] (평가 기준)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민간재해예방기관으로 2분야 이상 지정받은 경우 중복 인정 불가 ⇒ 건설기초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두 가지 이상 지정받은 경우에 대한 포상실적 평가기준 반영 필요	원안 동의

연번	항목	검토 안건	위원회 검토 결과
8	B.1.4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보관의 적정성	☐ 교육실적이 없는 기관의 평가기준 명확화(평가 기준 명확화) [변경 전] (평가 기준) 교육운영 실적이 없는 기관은 0점 부여 [변경 후] (평가 기준) 삭제 ⇒ 교육운영 실적이 없는 기관은 평가제외하고, ‘평가제외 (실적없음)’으로 공표 예정	원안 동의
9	B.4.1 자체평가 실시의 적정성	☐ 자체평가 실시율 평가기준 명확화(평가 기준 명확화) [변경 전] (평가 산식) $\frac{\text{설문조사 결과수}}{\text{평가대상기간총 교육수료자수}} \times 100$ [변경 후] (평가 산식) $\frac{\text{설문조사에 응한 교육수료자 수}}{\text{평가대상 기간 총 교육수료자 수}} \times 100$ ⇒ 평가 산식의 설문조사 결과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	원안 동의
10	B.5.3 K2B전산 관리의 적정성	☐ 자체평가의 적정성 판단기준 명확화(평가 기준 명확화) [변경 전] (판단 기준) 자체평가 항목 1개 이상 평가방법, 평가결과를 미작성한 경우 불인정함 [변경 후] (평가 기준) 자체평가 항목 1개이상 평가방법, 평가결과를 미작성한 경우 자체평가의 적정성은 “0점” 부여 ⇒ 자체평가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명확화가 필요	원안 동의